

木造 建造物文化財의 保存理論에 관한 연구

- 日本 建造物文化財의 修理事例를 中心으로 -

金 王 植

(奈良文化財研究所 客員研究員)

李 相 海

(成均館大學校 教授)

1, 序論

1-1, 연구목적

한국의 건조물문화재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등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문화재보호를 떠나 전 인류공통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이념은 다를지라도 문화재는 전 인류 공통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공동으로 보존한다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의 목적이며 그 등록은 1972년에 '세계유산회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정을 위한 가치평가의 일부 이론적 기초가 된 것은 1964년 베니스에서 개최된 역사적 건조물에 관한 회의에서 채택한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복을 위한 국제헌장'이라는 베니스헌장이었다. 베니스헌장은 또 1965년에 창설된 '국제건조물유적회의'인 ICOMOS의 철학적·윤리적 지침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건축 보존과 수복의 지도원리가 되고 있는 베니스 헌장은 석조건축보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조나 기타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을 시작으로 큰 반발을 받았고, 1990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ICOMOS 국내위원회와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¹⁾ 그러나 논의를 통해 ICOMOS의 많은 위원들은 그러한 모순과 목조문화재 및 문화재의 지역적·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건조물문화재의 보존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나 재료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존이론

및 철학의 문제이다. 한국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많은 건조물이 보존을 위한 수리와 복원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근년에는 경북 궁 근정전과 같은 대규모의 수리가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수리의 경우 부식부재에 대한 처리문제까지도 보존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존철학은 보존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며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인류 공통의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한 최근의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보존철학의 재정립은 중요하다. 재정립의 과정에서 우리는 보존이론의 발전과정과 각 국의 보존과정에서 나타난 실패와 성공사례의 객관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같이 목조건조물이 중심이고 지역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풍토는 많이 다르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도 목조건조물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목조문화재라는 특성과 비교적 우리와 가장 문화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건조물문화재 보존이론의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본의 건조물문화재 수리는 1897년 '古社寺保存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고 보존대상이 사찰과 신사에 한정되었다. 다음으로 1929년 '국보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보존 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었으며 법률사와 같은 중요 건물의 수리를 계기로 수리방법이나 기술 및 조직 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 후 1950년 '문화재보호

¹⁾Knut Einar Larsen, 『Architectural Preservation in Japan』, TAPIR PUBLISHERS, 1994, pp.1~2

법'제정으로 건조물의 수리는 본 제도에 올랐다. 그러나 아직도 철골에 의한 과도한 보강이나 복원의 문제, 기술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1994년 나라에서 개최된 보존가치의 재평가를 위한 '오센티시티(Authenticity)에 관한 국제회의'²⁾는 일본인들에게 보존이론 및 방법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위원들에게도 유럽과 다른 일본의 목조건축보존에 관한 새로운 인식은 보존이론 및 가치평가의 기준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은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의 건조물문화재 보존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수리 역사를 통해서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과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일본 건조물문화재의 수리는 近畿地方의 奈良縣, 滋賀縣, 京都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財團法人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에서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1971년에 창설된 것으로 그 이전의 수리는 각 현 교육위원회소속의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였다. 지금도 나라현과 시가현 및 교토에서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공무원에 의한 직영공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도 재단법인이라는 하지만 국립에 준하는 기관으로 그 수리공사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재는 관련법률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문화재지정과 범위는 크게 달라진 반면 수리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보존이론의 고찰은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수리공사중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중요건물을 중심으로 하였다. 고찰의 방법은 해당 수리공사보고서가 일차자료가 되었으며, 협회에서 매달 발간되는 '文建協通信'과 협회의 20년사, 30년사 및 문화청에서 발간

한 수리기술자의 실무지침서와 각 현에서 발간하는 실무지침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보존에 관한 지상논쟁이 있었던 『建築雜誌』와 『太陽』을 비롯한

표2.일본의 중요문화재 지정현황(2000.4.1 현재)

분 류		국 보	중요 문화재	계
近世以 前的 分類	神 社	58	1,011	1,069
	寺 院	156	918	1,074
	城 郭	16	118	234
	住 宅	20	128	148
	民 家	0	640	640
	其 他	3	255	258
소계		253	3,170	3,423
近代의 分類	宗教建築		13	13
	住居建築		89	89
	學校建築		56	56
	文化施設		28	28
	官公廳舍		24	24
	商業業務		12	12
	近代化遺産		11	11
其他		17	17	
소계			250	250
합계		253	3,420	3,673

기타 정기간행물과 나라에서 열린 '오센티시티에 관한 국제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협회와 나라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청 건조물과 담당 직원을 면담하고, 최근 대표적인 수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자들의 의견청취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논의의 범위는 건조물문화재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유적에 대한 복원은 제외하기로 하고 해체수리와 반 해체수리를 대상으로 하여 먼저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수리원칙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계보수이론과의 상충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절충과정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향후 목조문화재의 보존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建造物文化財의 現況과 保存史 개괄

2-1, 건조물문화재 현황

일본의 유형문화재는 크게 미술공예품과 건조물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건조물은 건축물과 탑·부도 등의 석조물을 포함하고 있다. 건조물은 또 지정형태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관리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주로 활용의 차원에서 외관

2) 본 회의는 1994년 11월1일부터 6일간 일본 나라에서 진행된 ICOMOS회의로 문화재의 선정가치기준인 'Authenticity'의 재평가 작업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이듬해 '나라도큐먼트'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회의자료집으로 이듬해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Knut Einar Larsen, 1995가 발간되었다.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건축물이 많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중요문화재와 국보가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국보는 중요문화재에 포함되어 있다. 또 가옥이 민속문화재로서 국가지정 중요유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4월1일 현재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는 <표1>과 같다.³⁾ 총 2,184건이 지정되었는데 동 수로는 3,673동에 이른다. 이중에 약 90%가 목조건축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건축물의 종류도 근대이전과 이후의 건물을 나누었는데 근대의 분류에 의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나 벽돌조 건축물이 많다. 또 이들 근대건축물들은 국보로 지정된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은 전체 795동이며, 이 중에서 목조건축물은 277동이다. 목조건축물 중에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이 137동으로 전체 지정목조건축물 중에서 50%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6%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석조문화재가 518동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65%를 차지하는 것도 일본과 대비되는 특징이다.⁴⁾ 이렇게 석조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목조건축물이 압도적인 일본과의 보존이론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으로 주목된다.

2-2, 保存史 概括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탈피한 명치유신의 변혁은 신세대의 개혁과 복고가 섞여 있었고, 유신의 혼란은 전국 성곽의 붕괴 및 명치원년(1868) 神佛分離令의 발표는 불교문화유산의 부정과 파괴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치4년(1871) 「古器舊物保存方」이라는 태정관의 포고가 발표되면서 과거 유물에 대한 유출방지과 보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물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보호하자는 것으로 건조물은 빠져 있었다.

다음으로 명치13년(1880)에는 「古社寺保存金」제도가 공포되어 전국의 유명한 社寺 539개가 선택되어 함께 21만엔의 국비가 유물 보존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건조물의 보존을 위한 조치로는 미미한 것이었다. 따라서 명치개혁의 혼란을

수습하고 처음으로 역사유산에 대한 보호정책으로서 「古社寺保存法」이라는 일본 최초의 문화재보존 법률이 명치30년(1897)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⁵⁾ 이 법률에 의해 건조물은 '特別保護建造物'로 지정되어 보호와 수리가 시작되었다. 33년 간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서 社寺建造物 506동이 보존수리되었으나 모두 사찰과 신사에 한정된 것으로 성곽과 민가 및 석조물은 소화4년(1929)에 제정된 '國寶保存法'에 이르러서야 보호 및 수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는 기술자도 강화되어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수리기술자로서 활약하게 되었다. 21년 간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서 435건의 건조물문화재가 수리되었는데 반 이상이 해체와 반해체의 근본수리였다. 이때 수리공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건조물이 파손되어 재해복구 차원의 부분수리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고사사보존법'에서는 건조물문화재를 특별보호건조물로 선정하여 보호하였으나 '국보보존법'부터는 미술공예품과 같이 국보로 지정 보호하였다. 그 외에 '現狀變更'이 허가제로 신설되어 법제화하였다.

1945년 일본은 패전에 따른 악성 인플레이션과 자연재해 등으로 보존사업이 최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위기에 직면한 신 정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검토되어 1950년에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文化財保護法'이 제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48년에는 문화재건조물의 복원과 수리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긴급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었고 기술진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한 양성연수와 교육이 실시되었다. 1952년에는 수리기술자가 150명에 달하게 되었다.⁶⁾

문화재보호법은 130조에 이르는 장문으로 1919년에 시행된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을 포함하고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조문화한 종합적인 법률이었다.⁷⁾ 문화재보호법은 4차에 걸친 대 개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1954년 민

5)伊藤廷男外, 『文化財講座 日本の建築 近世2・近代』, 第一法規, 1976, pp.215-216

6)服部文雄, 『建造物の保存と修理』, 『仏教芸術』139号, 毎日新聞社, 1981, p.86

7)文化財保護委員会, 『文化財保護の歩み』, 1960, p.112

3)日本 文化廳 홈페이지의 통계자료편

4)한국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자료마당의 통계마당에서 (2001.7.3일 현재)

표3.시대별·공사종류별 보존수리건수와 비율

시대별	내용	해체 공사	반해 체	지붕 수리	도장 공사	부분 수리	조사	계	보고 서
고사사보존법 시대(33년간) 1896~1928년	총건수	298	74	66	53	15	0	539	0
	년평균	9.03	2.24	2.00	1.61	0.45	0.00	15.33	0.00
	비율(%)	59	15	13	10	3	0	100	0
국보보존법 시대(21년간) 1929~1949년	총건수	231	8	82	5	109	0	435	25
	년평균	11.00	0.38	3.90	0.24	5.19	0.00	20.71	1.19
	비율(%)	53	2	19	1	25	0	100	6
문화재보호법 시대(48년간) 1950~1997년	총건수	993	287	1,677	220	634	13	3,872	954
	년평균	20.69	5.98	34.94	4.58	13.21	0.27	79.67	19.88
	비율(%)	26	8	44	6	17	0	100	25

속자료와 무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조문의 신설이었고, 둘째는 1968년 문화청의 창설에 따른 개정으로 문화재보호심의회가 신설되었다. 셋째는 1975년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사업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위의 확대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강화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체계를 보강하였다. 넷째는 1996년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과 중요문화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이었다.8)

문화재보호법시절의 수리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1971년 '사단법인 문화재건조물보존기술협회'가 창설된 것이다. 협회의 창설로 수리기술자들의 고용불안은 사라지고 신분이 안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건조물의 체계적인 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설계와 시공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이때부터는 설계감리를 협회에서 전담하고 수리시공은 일반 건설회사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주 업무는 설계와 감리에 한정되게 되었다.

일본의 문화재건조물보존을 위한 수리공사는 대체로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해체공사·반해체공사, 지붕수리, 도장공사, 부분수리, 조사공사로 나누는데 여기서 해체와 반해체수리는 근본수리라고 한다. <표2>에서9) 보듯이 고사사보존법시대 33년간에 506동이 수리되었으며, 국보보존법시대 21년간에는 435동이 수리되었다. 문화재보호법시대인

1950년부터 1997년까지 48년 간 3,824동이 수리되었다. 고사사보존법시대와 국보보존법시대는 근본수리인 해체공사가 중심이었으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수리공사가 년 평균 80건에 달할 정도로 이전의 15건, 18건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해체수리도 년 평균 21건 정도로 이전의 평균 10건에 비하면 늘어났지만 다른 공사와의 비율로 보면 26%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준공보고서의 발간이 현격히 증가하여 평균 공사건수의 25%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근본수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고사사보존법시대에는 보고서의 발간이 전혀 없었던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當初復原'과 '現狀保存'에 대한 論爭

일본에서 건조물문화재가 본격적으로 수리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古社寺保存法'이 제정되고 수리를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예산문제로 겨우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리에 불과했다. 첫 년도에는 中尊寺金色堂, 醍醐寺五重塔, 大報恩寺本堂, 新藥師寺本堂, 法起寺三重塔의 5건(10)에 지급되어 奈良의 신약사사본당과 법기사3중탑은 해체수리 되고 나머지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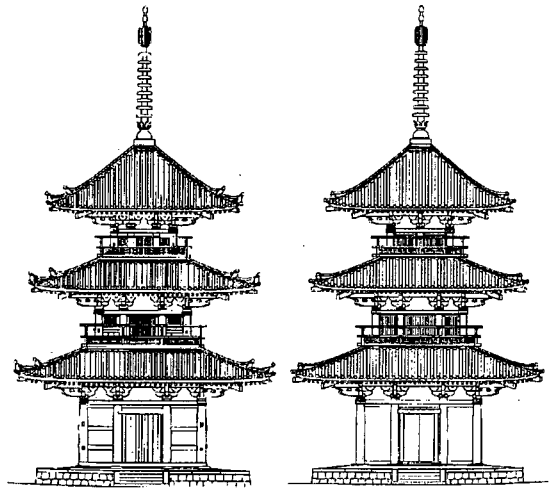


그림1.法起寺三重塔(수리전) 그림2.法起寺三重塔(수리후)

8)文化庁, 『新しい文化立国の創造をめざして—文化庁30年史』, 1999, pp.328-329

9)『建造物保存修理一覽』,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프로젝트, 1999

10)『建築雜誌』, 第122號, 明治30年2月, p.63



그림3.新藥師寺(현재)



그림6.石津寺本堂(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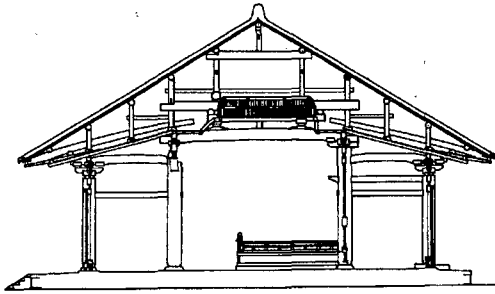


그림4.唐招提寺講堂(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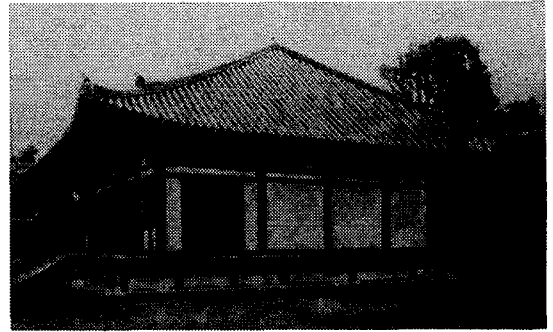


그림7.石津寺本堂(수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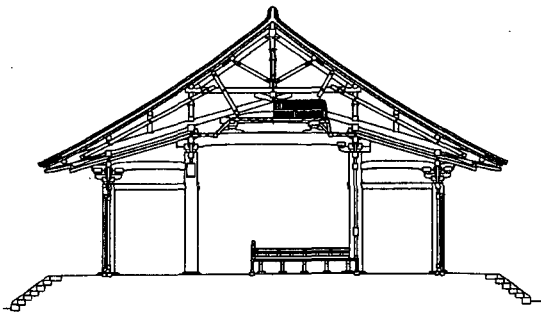


그림5.唐招提寺講堂(수리후)

해체 및 부분수리 되었다. 그러나 이 5건의 건물은 전후에 다시 근본수리가 이루어졌다.

신약사사본당은 약 9세기 초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가마쿠라 초기에는 내부에化粧天井이 설치되었고 1310년에는 정면에 맞배지붕의 禮堂이 설치되었다. 1897년의 해체수리는 나라현에서 담당하여 16개월의 공사로 진행되었는데 국고예산의

부족으로 古材와 殘材를 매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수리에서는 후대에 부가된 정면의 예당과 화장천정 등이 철거되고 창건당초로 복원되었다.¹¹⁾

1898년에 시행된 唐招提寺 金堂과 1907년에 공사가 끝난 唐招提寺 講堂에서는 천장 상부의 덧지붕구조(小屋造)를 철거하고 서양식의 트러스를 사용하여 구조보강하였다. 1896년의 平等院鳳凰堂¹²⁾도 같은 유형의 수리였으나 처마의 처짐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당초제사와 같이 트러스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소옥조를 남긴 상태에서 桔木이라는 새로운 부재를 삽입하여 수리했다. 1898년의 觀心寺金堂에서는 기존의 동자주에 의한 지붕구조를 소옥조 구조로 바꾸고 철근을

11) 岡田英男, 「建造物修理初期の批判と現在の施工上の問題點」, 『文化財學報』第13集, 奈良大學文學部文化財學科, 1995, p.58 재인용

12) 『國宝平等院鳳凰堂修理工事報告書』, 京都府教育庁文化財保護課, 1957

사용하여 보강하였다.¹³⁾ 1898년의 西明寺本堂¹⁴⁾과 1899년의 淨瑠璃寺本堂, 1907년의 金剛輪寺本堂에서도 기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옥조에 신 부재를 첨가해서 구조를 보강하였다.¹⁵⁾

이와 같이 명치년간에 진행된 보수공사에서는 신약사사와 같이 창건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하의 공사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소옥조라는 덧지붕 속에 新材나 철근 등을 이용하여 구조보강 한 예가 많다. 이것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복원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조와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적 관점에 따른 외관형을 중심으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는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의 예술적 가치 기준은 樣式史를 기준으로 해왔다. 1897년의 신약사사 금당은 가마꾸라 시대에 개수하면서 부가된 내부천장이나 전면의 3칸 禮堂을 철거해서 창건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했으나 1898년의 당초제사 금당에서는 같은 가마꾸라 시대에 개수하면서 변형된 보와 공포, 창 등을 그대로 두고 지붕가구는 트러스라는 양식가구를 도입했다. 1900의 東大寺法華堂의 경우는 가마꾸라시대에 개수된 禮堂부분은 현상보존 했다. 이것은 각각 가마꾸라시대 개수부분에 대한 양식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약사사의 경우는 본당 본래의 양식적 가치에 기준하여 제거한 것이고 뒤의 두 경우는 변형된 부분의 예술적인 창조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수리는 당시의 나라현 초대기사였던 關野貞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수리의 기본방침은 당시 關野貞이나 伊東忠太 등이 이룩한 건축사학의 樣式的 평가가 기초가 되었다.¹⁶⁾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복원이 이루어진 수리공사는 대정14년(1925)에 이루어진 室生寺本堂에서였다. 가마꾸라 후기에 지어진 이 건물에서는 소옥조에서도 이후에 첨가된 부재를 모두 가려내 제거하고 구조를 보강하면서 당초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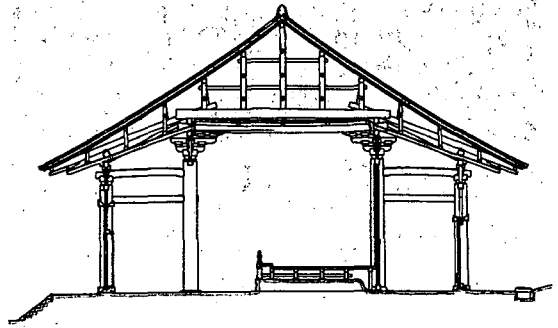


그림8.法隆寺講堂(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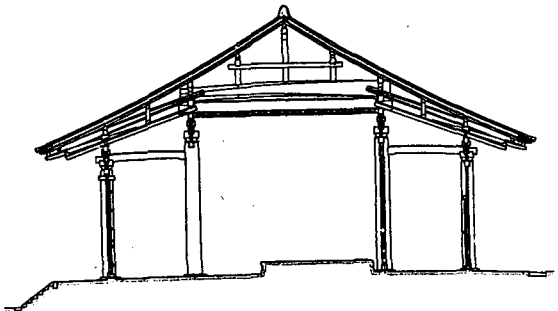


그림9.法隆寺講堂(수리후)

이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개조하지 않고, 또 당초복원을 현재의 상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현상변경’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상변경시에는 문화청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현상변경의 허가제는 1929년의 ‘국보보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 명치와 대정년간의 수리공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과도기로 볼 수 있다.¹⁷⁾ 국보보존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수리공사도 정착하여 당초복원은 이루어졌으나 원형을 파괴하는 개조와 변경은 사라졌다. 이것은 ‘국보보존법’제정에 따른 수리분야의 큰 변화였으며 또한 문화재의 지정범위도 사찰과 신사에서 민가와 성곽, 궁궐 등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서 수리한 초기의 예로 石津寺本堂이 있다. 1359년에 천태종으로 창건된 석진사는 후에 진언종으로 바뀌었다가 에도 초기에 황폐화되었던 것을 1698년 수리한 것이다. 원래는

13)『国宝観心寺金堂・重要文化財同建掛塔修理工事報告書』, 観心寺, 1979

14)『国宝西明寺本堂及塔婆修理工事報告書』, 西明寺境内滋賀県国宝建造物修理出張所, 1939

15)服部文雄, 前掲書, pp.87-89

16)伊藤廷外, 前掲書, pp.231-233

17)『卷頭鼎談-文化財における修理の考え方と技術』, 『建築雑誌』5, 日本建築學會, 2001.3, p.26

겹쳐마였던 것이 훑쳐마로 바뀌었고 양쪽 퇴칸의 불박이 세로살창이 궁판이 있는 만살창으로 바뀐 것 등을 소화년간의 수리에서 부재조사를 통하여 당초모습으로 복원하였다.¹⁸⁾ 法隆寺大講堂은 창건 년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738년 이후 창건되었다가 925년 소실되었던 것을 1077년 재건한 것이다. 이후 지금에 이르는 8차례의 수리를 거치는 동안 불단의 크기, 간살이, 천장의 모양, 내부 고주와 공포를 비롯해 평면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바뀌었다. 그러다가 元祿年間(1688-1704) 수리 이후에는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소화 10년(1935)부터 진행된 2년 반 동안의 수리를 통해 지금은 정면이 9칸이지만 1077년 재건당시에는 정면이 8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건당시의 8칸으로 복원하지 않고 慶長年間(1596-1615)의 9칸으로 복원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완전히 당초의 형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일 시점으로 되돌린 경우에 해당한다. 당초의 모습으로 돌리기에는 고증이 불가능한 자료적인 문제가 있었다. 창건당시의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나마 재건된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기에도 자료가 부족했던 것이다. 비슷한 실례가 법륭사 夢殿에서도 있었다. 본래 몽전은 나라시대 739년에 창건된 것인데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의 건물은 1230년 증수된 시점으로 정비되었다.¹⁹⁾

円光寺本堂(1257년 창건)의 경우는 소화년간의 수리에서 17세기 대수리 때에 창건당초의 모습이 바뀌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17세기 모습인 합각기와지붕의 5칸 당이었던 것을 1958년 해체수리하면서 창건당초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것은 그 모습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큰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히노키 겹질로 이은 맞배지붕으로 복원되었다.²⁰⁾ 이렇듯 당초복원은 자료의 유무에 따라 완전히 창건당시로 되돌려지는 경우와 자료의 부족이나 변형된 부분이 양식사적(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시대적 흐름 속의 어느 한 시점으로 되돌려지는 경우가 이후의 수리에서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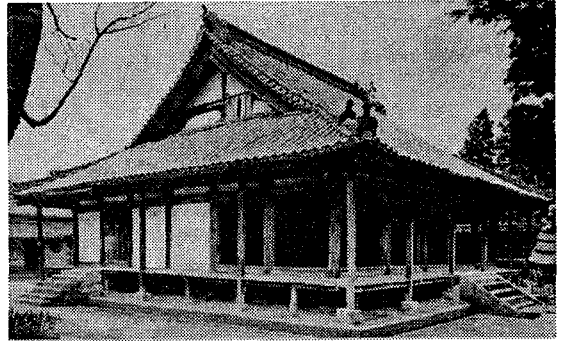


그림10.円光寺本堂(수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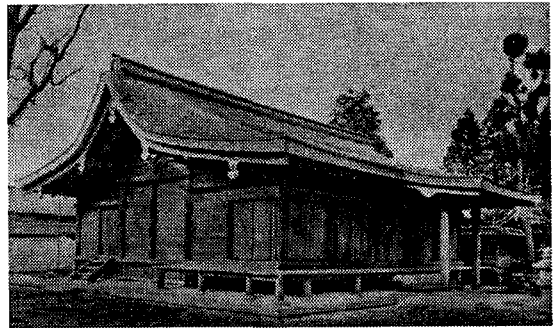


그림11.円光寺本堂(수리전)

다. 이러한 당초복원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보수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옛 모습을 찾아 복원한 것에 대해서 건축계의 일대 쾌거라고 할 정도의 칭찬이었고²¹⁾, 또 하나는 맹렬한 비판이었다.

잡지 『태양』의 기자인 高山林次郎은 시사평론에서 건조물문화재보존의 구체적인 자신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현상보존론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다. 그는 건조물문화재의 보존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창건이후 변형된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현상보존이고, 둘째는 후세에 변형된 부분이 미적으로 가치가 없어 이를 제거하고 당초복원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후세에 부가된 부분을 제거하고 당초복원 하는 것은 같으나 본래건물에 하지말고 원래 자리와 떨어진 곳에 새로운 재료로 원래 양식대로 새로 짓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논하면서 셋째 방법을 건조물문화재 보존방법으로 추천하였

18) 『国宝石津寺本堂修理工事報告書』, 滋賀県国宝石津寺建造物修理出張所, 1938

19) 『法隆寺国宝保存工事報告書』第6冊-国宝建造物法隆寺大講堂修理工事報告, 法隆寺国宝保存事業部, 1941

20) 『重要文化財 円光寺本堂修理工事報告書』, 滋賀県, 1959

21) 『奈良縣下に於ける古刹修繕』, 『建築雑誌』125號, 明治30年5月 / 『新薬師寺と法起寺』, 『建築雑誌』138號, 明治31年6月

다.²²⁾ 이외에 주로 역사학자들에 의한 주장은 고건축도 역사학사료로서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초의 모습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후세에 부가된 것을 포함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현상보존론'을 주장하였다.²³⁾ 이것은 역사적 증거를 없애지 말자는 것으로 당초복원론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辻善之助는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논하였다. 특히 신약사사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그 파손정도가 크고 후세의 부가물이 대량으로 제거되어 눈에 띠기 때문이었다. 후일의 수리공사에서는 좀 더 진중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4가지로 피력하였다. 첫째는 후세에 부가된 것이 조잡하고 건축형식을 파괴하며 원형이 명료한 경우에는 제거한다. 둘째는 후세에 부가된 것인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명료하지 않을 때는 후일의 연구자를 위하여 남겨둔다. 셋째는 후세에 부가된 것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원형여하를 상세하게 모를 때에는 상상에 따라 복구를 시도해 본다. 넷째 후세에 부가된 것일지라도 특히 역사상·미술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한다. 그리고 보수의 방법은 견고성을 위하여 재래의 공법을 답습할 것이며 구 부재는 가능하면 재 사용하여 옛 맛이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절충론을 제시하였다.²⁴⁾

그러나 건축사학자들은 초기 伊東忠太나 關野貞의 당초복원론이 그대로 계승하여 關野克의 경우는 '후세에 첨가된 것은 철거하고 후세에 변경된 부분은 복원한다'²⁵⁾는 수리원칙을 주장하였으며, 伊藤廷男의 경우에도 '건축은 모두 설계자의 의도가 잘 알 수 있는 당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또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²⁶⁾고 주장하였다. 또 淺野清, 藤島亥治郎, 村田治郎과 같은 대표적인

건축사학자에 의해 복원론은 계속 주장되었다.²⁷⁾ 이러한 건축사학자와 실무자들의 입장이 지금까지 일본 건조물 수리공사의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준용되고 있었으면서도 채색에서는 당초복원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옛 맛을 지키려는 낭만주의적 사고방법도 있었다. 당초복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關野貞의 경우에도 채색에서는 시간의 경과도 보존에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日光東照宮 채색복원을 맡았던 大江新太郎과 입장을 달리 한데서 알 수 있다. 大江은 건축의 완전성을 중시하면서 채색에서도 당초복원을 주장했는데 당초상태가 불명한 부분은 추정해서 복원하고, 창건 당초에 실현되지 못한 부분도 당초의 의도를 추정하여 복원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실제 東照宮에서 대부분 실현되었다.²⁸⁾ 關野貞은 일부분에서 시간의 경과도 인정하는 역사주의적 입장으로 취하고 있었으나 大江은 완전한 복원주의에 입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수리에서는 초기의 辻善之助가 주장했던 절충론이 많은 부분 받아들여져 '당초보존'과 '유지보존'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후에 첨가된 부분이 조잡하고 당초의 형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당초복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모습을 추정할 수 없거나 후에 첨가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될 때에는 그대로 유지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지보존보다는 당초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체해서 면밀한 부재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당초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사에 의해 당초의 모습이 밝혀지면 부재의 부식정도에 관계없이 후에 첨가된 부재는 제거되고 복원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복원은 부재의 보존보다는 창건당초의 모습이 중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창건당초의 복원에 대해 최근에도 역사학적 관점에서 복원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山岸常人은 「文化財 復原 無用論」에서 건조물문화재의 경우 당초의 모습이 확실히 규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당초복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22) 高山林次郎, 「古社寺及び古美術の保存を論ず」, 『太陽』第5巻第10号, 1899, pp.51-62

23) 水谷仙次, 「古社寺保存について」, 『中央公論』第15年7號, 明治33年7月

24) 辻善之助, 「古社寺保存の方法についての世評を論ず」, 『歴史地理』第3巻第2号, 1901, pp.91-100

25) 關野克, 「木造建築の保存と修復の實際」, 『文化財と建築史』, 鹿島研究所出版會, 1969

26) 伊藤廷男, 「建造物の保存」, 『文化財保護の實務』, 栢書房, 1979

27) 『建築史研究』第18號, 1954의 고건축의 수리와 복원에 대한 특집원고 중에서

28) 水瀧あまな, 「古社寺保存法時代の保存の概念と手法」, 東京工業大學大學院 修士論文, 1995, pp.12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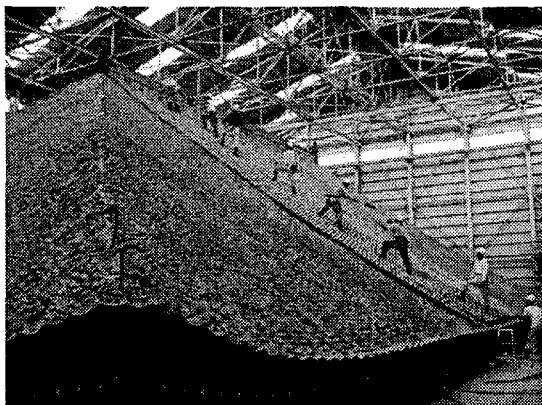


그림12.唐招提寺金堂의 解體修理(최근 진행중)



그림13.해체된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하는 작업

것에 대하여, 당초의 모습이 확실히 규명되어서 당초복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형태만으로는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건물은 당시 용도에 맞게 지어지고 용도가 변하면 조금씩 개조와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며 용도가 없어졌을 때는 철거되거나 개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물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찰 금당의 경우 종파와 교리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내부의 장치와 평면이 조금씩 변해 왔는데 복원에 의해 창건당초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왜곡이라는 것이다. 당초복원을 주장하는 건축사학자들에 대하여 당초형태가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역사학적 입장을 주장하였다. 건물은 역사적 경과를 나타내는 수리·개조·부가가 역사연구의 소재가 되는 것으로 그 가치를 가별게 결정해서는 안되며 건물과 아울러서 기능도 역사적 증빙자료인데 복원에 의해 건물에 부수되

는 제요소를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역사적 복원에 의한 역사연구의 필요성이나 일반 대중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모형에 대한 무용론도 주장하면서 풍부한 언어표현과 구체적인 기록으로 이를 대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조사과정에서 창건이후의 개조된 내용이나 시기, 요인·용도, 부가적 부분의 형성시기나 기법의 해명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보고서에 세밀히 기록하고 건물은 복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²⁹⁾

건축역사학자들은 창건당초의 모습이 가치가 있다는 미적 입장에서 주장에 따라 당초복원을 중심으로 수리를 진행하였으면서도 수리초기에는 외관중심이어서 외관상 보이지 않는 부분인 小屋組에 대한 철근 및 철골의 보강이나 많은 신재의 보충에 따른 원형파괴가 있었다. 지금도 東大寺大佛殿은 지붕 속에 철골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또 지진과 재해에 대비한 지반의 콘크리트 구조보강과 교체된 부재에 대한 고색단청 등은 창건 당시의 형식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실제로 神戸의 十五番館에서는 지반개량공사와 아울러서 지진대비를 위한 積層 고무의 설치로 원지반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또 福島縣의 舊五十嵐家주택에서는 지진에 대비하여 외부에 버트레스를 설치하기도 하고 토벽을 내력벽으로 하기 위해 중심에 합판을 대고 흙으로 표면만 바른 예도 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형파괴와 지진 대비를 위한 지반개량 및 구조보강과 과중한 가설덧집에 대한 자체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자체의 비판은 문화재건조물보존기술협회 창건30주년 기념좌담회에서 최근에 논의되었다. 지진에 대비한 과도한 구조보강에 대해서는 실제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것은 매우 긴 주기를 갖고 있는데 목조건물의 수명이 길어야 400년이므로 지진주기 이전에 해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벽체에 합판을 넣는 것은 전통 토벽이 지진에 대하여 더 강하다는 구조실험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구조체를 철골이나 철근으로 고정시키는 것도 현대건축적 입장에서의 짐작일 뿐 정확히 이것이 더 강하다는 실험은 없다. 따라서 구조실험에 대한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과 동시에 유구한

29)『建築史學』第23号, 建築史學會, 1994年9月, pp.92-107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축물은 그만큼 구조적으로도 안정된 것이었다는 증거이므로 전통적 기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보수에 첨단 기법과 소재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통기법에 의한 보수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쉽고 저렴한 단순 명쾌한 보강보다는 어렵고 비경제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심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본적 감성 때문이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의장을 희생한 보강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일본의 건조물문화재는 초기 건축역사학자에 의한 양식론적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 당초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학자의 복원무용론에 따른 유지보존이 주장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가치평가 기준이나 이론적인 논쟁은 없었다. 문화재보존론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정에서 유네스코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였다. 또 1992년 세계문화유산조약의 비준과 1994년 나라에서 개최된 '오센티시티에 관한 국제회의'는 일본인에게 문화재의 가치기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석조문화재 중심으로 정립된 유네스코의 가치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現代保存理論과 木造文化財保存의 相衝

베니스헌장의 수복원칙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된 오센티시티(Authenticity, 眞實性)를 가치기준으로 하는 현대 문화재보존이론이 나오기까지에는 시행착오와 문화재의 가치평가에 대한 철학적 전개과정이 있었다.

역사적 건조물은 이용 가능한 기간동안만 보존한다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부터 출발하여 특히 19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에 확립된 낭만주의적 복원이론은 양식적수복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물질적 진정성과 기념물의 기록적 가치를 강조한 현상보존운동을 거쳐서 지금의 오센티시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조물의 미적가치·역사적가치의 평가기준이 형성되었다.³¹⁾

일본의 건조물보존에서 오센티시티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1992년 '세계유산조약'에 가입하면서부터이다. 세계유산조약, 즉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은 미국이 국립공원설립 100년 기념사업으로 세계적인 귀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의 顯彰과 保護를 제창한 것을 1972년에 유네스코에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기계문명으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과 자연을 인류공통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보존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약에 따라서 세계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을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유산의 지정에 반대시 수반되는 것이 문화재의 가치판단이고 이러한 가치판단과 유산의 심의를 자문하는 기구로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건조물유적회의), 이크롬(ICROM, 문화재보존수복연구국제센터) 및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IUCN(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국제연맹)가 있다.

이들 자문기구의 윤리적 가치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현대보존이론이고 현대보존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오센티시티(Authenticity)이다. 오센티시티는 그리스어의 純正性을 의미하는 오센티(Authenti)에서 기원한 것으로 眞正性 또는 眞實性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개념은 유럽적인 사고의 산물로 동양적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개 <권위가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직접적, 실존하는, 현실의, 진실의>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³²⁾

문화재건조물 보존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온전한 것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건조물의 가치는 양식·재료·기술·환경의 측면에서 진실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센티시티의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이 진실성은 반드시 오리지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당초의 형태나 구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축이나 증축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 자체가 미적·역사적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이것은 일본의 건조물보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30)「文化財建造物修理事業30年の回顧と展望」, 「30年のあゆみ」, 財団法人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会, 2001의 권두 좌담회자료

31)Jukka Jekilehto, 『Authenticity in Restor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APT Bulletin17, no3-4: 1985, pp.5-11

32)Knut Einar Larsen,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UNESCO·ICROM·ICOMOS, 1995, pp.35-36

33)Knut Einar Larsen, 『Architectural Preservation in Japan (日本の建築保存)』, TAPIR PUBLISHERS, 1994, pp.21-22

당초복원과 현상보존 중에서 현상보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보존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의 건조물은 전혀 오센티시티(진실성)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1992년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록과정에서 유네스코 심의위원들의 심사기준에 의해서였다. 당초복원으로 일관해 왔던 일본의 건조물문화재수리는 당초형태로 되돌리는 양식의 통일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보존수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재의 교체로 인해 재료의 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재료의 진실성에 관한 것은 일본의 전문가들도 이제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혹 감은 긴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성심껏 보존수리를 해온 일본의 보존과정을 살펴본 유네스코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재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적용해왔던 진실성에 관한 가치판단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4년 일본 나라에서 '오센티시티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를 통해서 '나라도큐먼트'가 발표되었고 문화와 재료의 다양성을 포함한 오센티시티의 개념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에서도 양식적 복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세건물의 복원에 역사적 조사 및 동일양식의 건물을 참조해서 당초건축의도에 따라, 또는 가장 중요시기의 모습으로 건조물 전체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양식적 복원이론은 명치유신 기에 일본에서도 채택되어 지금까지 문화재보존 원칙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양식적 보존론은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 이후 존러스킨(John Ruskin)과 윌리엄모리스(William Morris)의 주장에 따라 유지보존론으로 바뀌어 유럽지역의 보편적 보존이론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이 현대 보존이론으로 발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가치판단과 문화재수복의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³⁴⁾ 그러나 일본은 변화된 유럽의 보존이론과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석조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과는 다른 목조중심의 문화재라는 것과 일본문화의 독특한 상황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보존이론은 전문가나 일반 대중의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가치관과 관계가 있고 그 가치관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보존의 목적은 문화재의 그러한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가치는 같은 가치척도로 잴 수 없는 정신적·학술적·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가치의 체계적분석이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의 지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20세기 초 알로이스리글(Alois Riegl)은 역사적 건조물의 가치를 시대가치·역사적가치·의도적 기념가치·이용가치·예술적 가치로 분류하였으며, 버나드필덴(Bernard Feilden)은 3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하여 정서적가치·문화적가치·이용가치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보존이론에 반영되어 이후 보존수리 및 세계문화유산지정의 가치척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베니스현장'에서는 역사적 건조물 보존의 필요조건으로 이용가치에는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제3조 건조물의 보존과 수리의 목적은 예술작품으로서 보호함과 동시에 역사적 증거로서 보존해야한다는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가치의 중요성을 동시에 역설하고 있다. 제4조와 제5조의 보전에 대해서는 건조물의 항구적 유지를 기본전제로 하면서 보전은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사회적 활용이 요구되지만 디자인과 장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용가치는 디자인과 장식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능의 변화에 따른 개조를 검토하거나 인가할 때에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였다.³⁵⁾

현장의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수리 원칙에서는 수리목적은 건조물의 미적·역사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오리지널 재료와 자료를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또 부득이 신 재가 보충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그럴 경우에도 수리전과 진행 중에 반드시 건조물에 대한

35) 베니스현장은 1964년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제2회 역사적 건조물에 관한 건축가와 기술자들의 국제회의에서 작성된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복을 위한 국제현장'으로 이듬해 1965년에는 이를 이코모스에서 채택하였다. 총16조로 이루어진 이 현장은 중에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문화재의 수복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34) Knut Einar Larsen, 『앞의 책』, 1994, pp.87-89

고고학적·역사적인 연구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또 수리는 창건당초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양식의 통일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였다.³⁶⁾ 당초의 디자인이나 재료뿐만 아니라 시대적 증거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유지보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베니스 현장의 취지는 버나드필덴(Bernard Feilden)의 보수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수복된 건물의 상태나 사용된 모든 재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또한 역사적 증거가 파괴되거나 왜곡 및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건물에 손을 댈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미적·역사적·물리적인 가치관의 존중에 따른 통제 하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복원계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可逆의이어야 하며, 장래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가능한 범위에서 보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후세에도 접근 가능하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존재료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며 새로운 부재를 첨가할 경우에는 구 부재와 색·농담·질감·형태·척도에 조화하면서도 당초 재료보다 눈에 띄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⁷⁾

이것이 베니스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지금까지 문화재수복의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 또 유지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오센티시티의 가치는 제11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층의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이론은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문화재보존 이론에는 적합하지만 목조문화재의 보존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초의 형태로 되돌리는 양식의 통일, 즉 양식적복원은 유럽에서도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로 디자인(의장)의 오센티시티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하더라도 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재의 교체는 재료의 오센티시티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유럽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式年造替'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伊勢神宮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한번씩 새로 지어진다. 7세기부터 시작된 신사건축의 유지·보존의 방법으로 시행된 式年造替는 신위만이 원래의 것이고 건축물은 원래의 양식을 따르기는 하지

만 완전히 신 재료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신사건축의 유지보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종교의식화 하였다.³⁸⁾

현행의 가이드라인은 문화유산의 오센티시티를 재료, 디자인(의장), 기술, 환경이라는 4개의 측면으로 평가한다. 복원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현대의 보존이론은 실증적인 시각을 중시하고 또 4개의 측면 중에서도 특히 재료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式年造替는 디자인, 기술, 환경의 3개 측면은 100% 오센티시티가 있는 반면 재료 측면에서는 0%의 오센티시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인들은 현재 유럽의 보존이론을 완성시킨 존러스킨이나 윌리엄모리스의 '폐허도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폐허의 목조건축에서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리·복원을 통한 완성된 건축물이 아름다운 것인지, 방치된 폐허의 건축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석조건축에 대한 목조건축의 내구성문제가 오센티시티 개념의 이상에 대한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1994년 나라국제회의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재료의 다양성을 포함한 오센티시티의 개념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현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된 오센티시티의 평가를 종래와 같이 재료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문화와 목재 외에도 종이나 진흙 및 식물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문화유산을 재료의 오센티시티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³⁹⁾

그러나 석조에 비해 수명이 짧은 목재문화재의 존재의 문제와 대상에 대한 同定은 철학적인 문제이지만 형태의 동정이 재료의 진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현행의 보존이론은 당초형태나 재료에 관련된 대상의 동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존하는 부재를 보존하는 것을 현행의 보존 사업에서는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물의 동정은 역사를 경과해서 획득되어진 실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역사적 건조물의 미적가치는 역사적 기록으로

36)『特輯 世界文化遺産奈良Conference』, 資料2, 『月刊 文化財』2, No.377, 1995, pp.35-37

37)Knut Einar Larsen, 『앞의 책』, 1994, p.21

38)益田兼房, 『世界文化遺産奈良Conferenceへいたる道』, 『月刊 文化財』2, No.377, 1995, p.14

39)稲葉信子, 『文化遺産の新しい枠組みと奈良会議の意義』, 『月刊 文化財』2, No.377, 1995, p.27

서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다가 건물의 미는 형태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재료의 풍화된 모습 즉 '고풍'과도 관련이 있다. 옛 재료의 보존이 역사적 건조물로서 우리들의 정서에 교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존작업에서는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구 부재를 재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현대보존이론의 지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오센티시티의 개념을 확대한 나라도큐먼트는 기존의 가이드라인 틀 속에서 문화적·재료적 다양성을 포괄한 오센티시티 가치의 확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석조문화재 중심의 유럽적 가치관이 목조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라국제회의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라도큐먼트는 총13조와 용어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제1~4조의 전체에서는 모든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법으로 오센티시티의 개념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5~8조의 문화의 다양성과 유산의 다양성에서는 다양한 문화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이것들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가치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9~13조의 가치와 오센티시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은 유산의 가치에 근거하지만 그 가치판단은 그 유산에 대한 情報源⁴⁰⁾에 의하고 정보원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가치와 오센티시티의 평가기준을 고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이 귀속된 문화와 문맥 중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유산을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정보원의 신뢰성과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⁴¹⁾

도큐먼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심사위원들의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문화재의 가치는 귀속된 문화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하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가

치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료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 結論

지금까지 일본의 목조 문화재 보존사례를 중심으로 그 보존이념의 변천 및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보존이론과의 상충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같이 목조건축문화재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의 목조문화재보존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한국에서 건조물문화재의 보수사업이 우리 손으로 시행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해방 후 1950년대는 재산관리차원에서 고궁 등의 경상적 유지관리 외에는 특별한 문화재보수사업이 없었다. 1961년 5월14일에 시작된 남대문의 해체복원과 석굴암의 보수가 건조물문화재 보수의 시작이었고 꾸준히 이어져 1969년에는 광화문의 복원공사가 있었다.⁴²⁾ 초기의 공사들은 당초의 원형을 재현하는 복원과 손상부분을 수리하는 유지보존이 병행되었다. 이 중에서 광화문이 콘크리트로 재료자체가 바뀌어 복원된 것은 특수한 사례이지만 최근에도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박물관이 헐리고 경복궁 일곽이 복원되고 있는 등 복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또 경복궁근정전의 보존수리에서는 고주 전체를 신부재로 교체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복원과 부재의 교체, 해체수리 등의 전반적인 목조건조물 보존의 이념은 일본과 다르지 않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보호원칙을 원형 유지에 있다고 하였다.⁴³⁾ 여기서 원형유지는 다분히 현상에 대한 유지보다는 건립당초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후세에 변형된 것은 당초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양식적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당초복원을 보존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대의 보존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미적가치와 역사적가치의 균형을 깨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지

40) 나라도큐먼트의 용어정의에서는 保存은 문화재를 이해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알고, 그 재료의 보존을 확실한 상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복원이나 정비를 하는 모든 작업이라고 하였다. 情報源은 문화재의 성질·특징·의미 및 역사를 알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서자료, 구전, 그림자료를 말한다.

41) 『特輯 世界文化遺産奈良Conference』, 資料1, 『月刊 文化財』 2, No.377, 1995, pp.33-35

42) 『文化公報30年』, 문화공보부, 1979, pp.283-291

43)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문화재보호의기본원칙, 99.1.29신설)

론이다. 당초복원은 미적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 보존이론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당초에는 비판적복원론에서 미적가치와 역사적가치가 갈등하는 경우에는 미적가치가 우선한다고 하였으나 현대에는 이것이 역전되어 역사적가치를 우선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정의에서 역사적가치와 예술적가치 이외에 학술적가치와 경관적가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베니스헌장에서 말하는 문화재의 보존가치보다도 포괄적인 가치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학술적가치는 역사적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경관적가치는 환경을 포함한 개념으로 미적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적가치와 역사적가치에 대한 보존이념의 정립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대 유네스코의 보존이론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보존의 목적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건조물을 연구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이 장래세대에도 같은 선택권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7년 세계유적회의의 운영방침에서는 당초의 형태 및 구조와 아울러 역사의 경과 중에 개조·추가된 부분도 미적·역사적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당초의 재료를 가능한 재사용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측면만이 너무 강조되면 건조물문화재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으로 보존공사의 미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건축보존을 기술적인 문제로만 국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목조와 흙 및 식물재료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석조에 비해 수명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석조도 소멸하는 유한물체라는 것은 동일하다. 일본의 式年造替나 복원과 같이 완전히 새 부재로 재건하는 것의 배후이념은 실제건물 뿐만 아니라 양식을 보존하려는 생각으로 볼 수 있다. 건물의 당초 이념·의도·디자인은 모두 불변이고 이것이 건축물의 본질이라는 생각에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목재는 부식되면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당초의 부재를 고집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유럽의 현대 보존이론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철

학적인 근본논쟁을 떠나서 건조물문화재보존의 목적은 후손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를 그대로 남기는 것이라면 일단은 그 대상물의 존재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존재를 전제로 미적가치와 역사적가치를 동시에 적절한 균형속에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방법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유럽의 현대보존에서는 폐허 그대로 층의 보존이 중점이다. 즉 풍화에 따른 시간의 유무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목조건물에서는 층의 보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존재하여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미술품의 보존과 같으나 다른 점은 형태나 미관의 보존 이외에 재료의 역학적인 물성도 보존되어야 건조물문화재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썩은 부재를 갈아내는 행위는 존재를 위한 역학적 물성의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물론 물성의 유지를 위해서 부재의 교체보다는 합성수지나 금속물의 보강 등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예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재의 역사적 증거와 시간의 유무도 동시에 보존하는 방법이지만 기술적·경제적인 뒷받침 이외에 부식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재에 최대한 시간적 유무가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에 따른 부재교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해야하며 역학적 물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재 전체교체 보다는 부분적 교체와 금속물에 의한 역학적 보강도 고려되어야 한다. 100% 신재로 갈면 재료의 역사성이 100%사라지는 것이지만 10%가 남아 있고 90%를 철물로 보강하여 재사용 하였다면 10%의 역사적 증거는 남기는 것으로 최대한 원래부재를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문화재보존의 원칙인 것이다. 또 부득이 부재 전체를 가는 행위를 포함한 보수보강은 반드시 기록을 통하여 남겨져야 한다.

후세에 부가된 부분에 대한 제거를 통한 당초복원은 일본 건조물문화재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당초복원의 이념은 베니스헌장 제11조의 역사적 증거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유지보존론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묵인될 수 있었던 것은 수리보고서에 그 역사적 증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세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고 역

사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부재는 당초부재와 색채·색조·질감·형태가 구 부재와 조화되면서도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베니스헌장 제12조의 규정이다. 그러나 목조문화재의 경우는 조화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부재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부재를 교체할 경우에는 동일·재료, 동일 수종의 목재를 사용하고 또 같은 도구에 의해 같은 기법과 자세로 치목하여 조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구 부재와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재에 불 도장을 찍어서 보수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기능인의 종합적인 훈련이 전제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 보존수리는 역사적인 재료나 역사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베니스헌장 제10조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설계원리의 지식이나 장인기능을 보존하는 노력이 보편적 이념을 넘어서 구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문화재보존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 체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체수리와 복원수리에 따라 현상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1929년 국보보존법부터 조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것은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당초복원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제한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조문화재의 수리방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유네스코 오센티시티 가치평가가 융통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보존이념과 우리의 보존은 관계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건조물문화재를 어떻게 후세에게 전해 줄 것인지를 근본으로 생각하는 보존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적가치, 역사적가치를 떠나서 후세에도 우리가 현재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가치가 그대로 전달되고 후손들도 그 증거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초복원을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역사적 증거를 알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수리보고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기술을 동원해서 구 부재를 재사용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래도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 부재는 교체되어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보존하고 나머지는 지붕 속에 넣어서 보존하고 있다. 구 부재는 역사적 증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건조물문화재 보존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기술과 체계로 보존하느냐가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다. 베니스헌장은 필요에 의해 수리를 할 경우에는 먼저 공사전과 공사중에 역사적·기술적·학술적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수리사의 조사는 역사적 증거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통한 역사적 증거의 확보는 또한 정확히 건물을 복원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남겨서 후세에게 증거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보수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학술적 조사에 투여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상당한 식견을 갖춘 설계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러한 조사와 보고서 간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 주요 공사의 경우에는 보고서 간행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공사기간에 보고서 간행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전체 공사의 설계감리비 비율도 30%정도(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조사작업과 보고서 작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보수설계업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설계감리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아울러서 보수시공업과의 관계조율 및 학술조사가 가능할 정도의 감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는 관계학자나 전문가에 의한 위촉으로 현장 학술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학자에 의한 현장조사는 건축사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화재 수리기술자나 상주감리가 필요한 수리의 범위도 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유지를 위한

44) 최근 진행되고 있는 唐招提寺 金堂의 해체수리 경우이다. 수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해체 및 반해체와 같이 근본수리로 분류되는 수리공사는 대개 주임기술자라는 설계감리자가 현장에 2명 정도 상주하게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한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

부분수리 까지 보수기술자나 상주감리를 두는 것은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이다.

중요건물이라는 가치판단은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공사의 범위가 원형을 파괴할 소지가 있는 전체 해체공사와 부분해체공사의 경우는 보수기술자와 설계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고 부분수리의 경우에는 비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수리기술자도 등급을 나눠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중요 공사를 맡고 초심자는 보조하면서 배워나가거나 유지보존 정도의 부분수리공사 책임을 맡기는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공사의 중요도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부분수리라 할지라도 범위가 넓을 때에는 금액이 올라가고 중요 건물의 해체공사 경우에도 규모나 범위가 작으면 공사금액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화재공사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또 부재를 교체할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한 보강하여 구 부재를 사용해야 하며 교체된 부재의 보존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일본은 지붕속 공간이 커서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교체된 부재는 표시를 해서 수리의 역사적 증거를 남기도록 해야 한다. 수리의 목적은 건물이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존이론에 따른 역사적 증거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보고서 발간과 부재의 보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을 했으나 건조물 보존은 행정시스템과 기술력, 경제력, 보존철학, 기술자의 양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결론적으로 건조물문화재 보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후손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증거를 남겨주는 것이며, 보존방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후에 보수할 때 지금의 보수한 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보수의 기본원칙은 보존이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보존이념과 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國寶唐招提寺講堂他二棟修理工事報告書』, 奈良縣教育委員會, 1972
- 『國寶法起寺三重塔修理工事報告書』, 奈良縣教育委員會, 1975
- 『國寶平等院鳳凰堂修理工事報告書』, 京都府教育廳文化財保護課, 1957
- 『法隆寺國寶保存工事報告書』第六冊-國寶建造物法隆寺大講堂修理工事報告, 法隆寺國寶保存事業部, 1941
- 『重要文化財 円光寺本堂修理工事報告書』, 滋賀縣, 1969
- 『國寶石津寺本堂修理工事報告書』, 滋賀縣國寶石津寺建造物修理出張所, 1938
- 『國寶西明寺本堂及塔婆修理工事報告書』, 西明寺境內滋賀縣國寶建造物修理出張所, 1939
- 『國寶觀心寺金堂・重要文化財同建掛塔修理工事報告書』, 觀心寺, 1979
- Knut Einar Larsen, 『Architectural Preservation in Japan』, TAPIR PUBLISHERS, 1994
- 伊藤廷男外, 『文化財講座 日本の建築 近世・近代』, 第一法規, 1976
- 『佛教藝術』139號, 毎日新聞社, 1981
- 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保護の歩み』, 1960
- 文化廳, 『新しい文化立國の創造をめざして-文化廳30年史』, 1999
- 『建造物保存修理一覽』,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프로젝트, 1999
- 『建築雜誌』第122號, 明治30年2月
- 『文化財學報』第13集, 奈良大學文學部文化財學科, 1995
- 『建築雜誌5』, 日本建築學會, 2001.3
- 『建築雜誌』125號, 明治30年5月
- 『建築雜誌』138號, 明治31年6月
- 『太陽』第5卷第10號, 1899
- 『中央公論』第15年7號, 明治33年7月
- 『歷史地理』第3卷第2號, 1901
- 關野克, 『文化財と建築史』, 鹿島研究所出版會, 1969
- 伊藤廷男, 『文化財保護の實務』, 栢書房, 1979
- 水瀨あまな, 『古社寺保存法時代の保存の概念と手法』, 東京工業大學大學院 修士論文, 1995
- 『建築史學』第23號, 建築史學會, 1994年9月
- 『30年のあゆみ』, 財團法人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2001
- Knut Einar Larsen,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UNESCO・ICCROM・ICOMOS, 1995
- 『月刊 文化財』2, No.377, 1995
- 『建築史學』第24號, 建築史學會, 1995.3
- 『文化公報30年』, 文化公報部, 1979

A Study about the Conservation theory of Architectural Monuments

-with a Focus on similar work done in Japan-

Kim, Wang Jik

(Visiting Researcher, Nara Reser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Lee, Sang Hae

(Professor, University of Sungkyunkwa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preservation of wooden buildings as cultural properties. I got the idea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cultural properties of wooden buildings by watching the process of repairing them in Japan.

The Japanese have been endeavored to restoring old wooden buildings to their original forms for more than a hundred years. The idea to change decayed materials into new materials or the new approach to the process of restoration used to be in conflict with the concept of "Authenticity"--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based on the Western of thinking, established by UNESCO.

Since "Nara Conference on Authenticity", held in 1994 in Nara, however, the concept of "Authenticity" has changed, and the peculiarity of certain cultural properties of the wooden buildings and their diversity of culture have now begun to be recognized by UNESCO. This is a crucial change for the study of preservation, repair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wooden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look closely at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concept "Authenticity" and find a better method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wooden buildings.